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 62 호

2017. 9. 25.

건명	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주민생활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7. 9. 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9. 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 일자리창출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 빈곤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(안 부칙 제2조)

□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필요 사업자금 지원이나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
- 기타 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,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준수 하였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